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
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3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1.

발 의 자 : 이수진·유동수·전종덕
남인순·김 윤·전진숙
최혁진·김정호·백혜련
용혜인·백선희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(意思)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함.

그런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. 또한,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달리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므로, 미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하

는 것이 바람직함.

덧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·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호스피스 이용·대기 환자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, 이용·대기 환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, 휴업의 경우도 그 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휴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,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·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7호·제8호, 제10조제1항·제2항, 제23조제1항제7호, 제25조제1항, 제26조 및 제28조의2제1항).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 중 “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(이하 “말기환자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(이하 “말기환자등”이라 한다) 및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말기환자등”을 “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말기환자등”을 “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말기환자등은”을 “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는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26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·인력 등 중요사항 변경 신고 및 폐업·휴업 신고에 대한 검토 업무 지원

제25조제1항 중 “시설·인력·장비”를 “시설·인력”으로 한다.

제26조제1항 중 “인력·시설·장비”를 “시설·인력”으로,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제28조의2에 따른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9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

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폐업 또는 휴업”을 “휴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9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”를 “그 밖에 제1항,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,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”로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·인력 등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③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호스피스 이용 및 대기 환자에 대한 보호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(轉院) 또는 연계 등의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및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폐업이 지역사회 호스피스 제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⑦ 호스피스사업 휴업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1회에 한

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항 단서에 따른 연장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.

제28조의2제1항 중 “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”를 “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,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신고,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7. “담당의사”란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로서 <u>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(이하 “말기환자등”이라 한다)</u> 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.	7. ----- ----- <u>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(이하 “말기환자등”이라 한다)</u> 및 <u>말기가 예견되는 환자</u> ----- -----.
8. “연명의료계획서”란 <u>말기환자등</u> 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.	8. ----- <u>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9. (생략)	9. (현행과 같음)
제10조(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·등록 등) ① 담당의사는 <u>말기환자등</u> 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, 연명의료계획서 및 호스피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	제10조(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·등록 등) ① ----- <u>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</u> ----- ----- -----.

② 말기환자들은 의료기관 (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·한의원·병원·한방병원·요양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서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~ ⑦ (생략)

제23조(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「의료법」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(이하 “종합병원”이라 한다)을 중앙호스피스센터(이하 “중앙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.

1. ~ 6. (생략)

<신 설>

7. (생략)

② 말기환자등과 말기가 예견
되는 환자는-----

③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중앙호스피스센터의 지정
등) ① -----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제26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
기관의 시설·인력 등 중요사
항 변경신고 및 폐업·휴업
신고에 대한 검토 업무 지원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② ~ ④ (생략)

제25조(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·인력·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, 자문형,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6조(변경·폐업 등 신고) 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·시설·장비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

<신설>

<신설>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-----

-----시설·인력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6조(변경·폐업 등 신고) ① -----

-----시설·인력-----

-----제28조의2에 따른
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
하여 보건복지부장관-----
-----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·인력 등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.

③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

<신 설>

<신 설>

②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호스피스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호스피스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폐업 예정일부터 1개월 전까지 호스피스 이용 및 대기 환자에 대한 보호나 다른 의료기관으로의 전원(轉院) 또는 연계 등의 조치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조치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및 해당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폐업이 지역사회의 호스피스 제공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-----
-----휴업-----

-----.

<신 설>

<신 설>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28조의2(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 및 호스피스의 신청 등 호스피스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(이하 “종합정보시스템”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⑦ 호스피스사업 휴업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. 다만,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장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 방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7항 단서에 따른 연장 허용 기간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.

⑨ 그 밖에 제1항,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,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-----.

제28조의2(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) ① -----호스피스전문기관의 정보, 제26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